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 제415- 406 (전화번호 75-6593)	전결규정 조 항	부시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제 2 부 시 장	
시행일자			결 1975.4.28
보존년한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협조	법무담당관(고시안심사)
	도시계획과장			시민과장
	지역계획계장			종합계획계장
				가로계획계장
기안책임자	권 완	75.4.12. 이제섭		

경 유 수 신 참 조	각안참조	발신	시 장	통제	1975.4.28
제 목	도시계획 용도지역일부변경 지적승인				

고시제 58 호

제1안 내부결재

1. 도시계획 지적고시 변경 요령 방침결정에 의하여 서울시 고시 제122호(74.8.26)로 지적고시한바 있는 퇴계로 부근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및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 규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고시코저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지적승인조서

단위 M²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적 당초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비 고
상업지역	중구퇴계로 일부지역	6,271,600	11,000	6,287,000 (struck through: 6,282,600)	

* 도면표시와 같음.

첨부. 변경 지적고시도면 (1:1,200)1부

제2안 고시안

. . 서울특별시고시 제 . 호

고시안심사	1975.4.16	제 45
심 사 자	법제계장	법무담당관
	전결	

정서

관인

합송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지적승인

1. 서울시고시 제122호(74.8.16)로 지적고시 한바 있는 상업지역 일부에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및 건설부고시 제123호 규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일부변경 지적승인 조서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적 당초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비 고
상업지역	중구퇴계로 일부지역	6,271,600㎡	11.000	6,287.000	

*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시장

제목 동 건

1. 도시415-1426호(74.8.26) 에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고시 제122호(74.8.26) 로 지적고시 한바 있는 도심부 지역 일부지역에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및 건설부 고시 제123호(73.4.4) 의 규정에의거 별첨 고시문 사본및 도면표시와같이 일부변경 지적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문사본및 고시도면1부.

제4안

수신 수신처참조 발신 시장

제목 동 건

1. 도시415-1426호(74.8.26) 에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고시 제122호(74.8.26) 로 지적고시 한바 있는 중구

획제호 일부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123호 (73.4.4)의 규정에의거 별첨 고시문사본 및 도면표시와같이

일부변경 지적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제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바라며

3. 본 고시사항을 규정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일것이며 민원업무에 지장없기바람.

첨부. 고시문 사본및 고시도면각1부.

수신처: 중구청장, 성동구청장,

제5안

수신 총무처장관(시: 공보실장) 발신 시장(과장)

제목 관(시)보 게재의뢰

1. 다음과같이 관(시)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구분: 고시

나. 관(시)보 게재건명: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지적

승인

다.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13조

첨부. 고시문 사본 각2부(1부). 끝.